

##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9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 대법관이란 자리

대법관은 최근까지도 경외의 대상이고 권위의 상징이었다. 법학도라면 대부분 잠시라도 대법관을 꿈꾸게 되지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값이 최소 얼마라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되었고 실제 그 도장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힘겹게 이기고 상대방의 불복으로 상고가 되자 의뢰인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계속된 회유를 받기도 하였다. 그 무렵에 너무 화가 나서 이름이나 빌려주고 엄청난 돈을 받는 자는 창녀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법관을 마친 후에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연민을 느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된 기자가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전후하여 어느 대법관의 사무실을 8회나 출입하였으며, 그 판결은 전혀 예상외의 내용으로 선고되었고 그 대법관은 이후 대장동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법조인들조차 대법관 사무실에 1회라도 방문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확인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였고, 그 대법관은 당당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은 국민들 앞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다가 바로 들통이 나고도 태연하게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관이 된 분은 본업인 교수 급여보다 몇 배가 넘는 자문료를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고 평균 월 1회 이상 로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써준 것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이 써 준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60여 건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왔는데도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기어이 대법관이 되고 말았다.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심리위원회도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한쪽 당사자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천만 원씩 받은 것이 과연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어떻게 그런 분이 학문적 자유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 뽀뽀함과 배짱이 대법관의 최고 덕목이 되었다. 국회의 청문회와 동의

절차는 그저 장식에 불과하고,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같은 대학의 같은 전공 교수가 잇따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으니 대형 로펌의 공략대상이 충분히 예상되고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왜 법조카르텔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도 조장하지 못해 안달인가. 도대체 이게 상식에 맞는 것인가.

교수가 되어 하루 종일 판례를 읽고 검토하면서 즐겁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 판례도 지겹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정도이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혹시 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징계를 받을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정서 하나 받고 싶지 않아서 잘못이 없어도 의뢰인의 항의만 있으면 선임료까지 반납하였는데, 참으로 순진하였다.

앞으로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들의 임명이 이어질 것이다. 존경과 영광은 고사하고 알팍한 법기술자들이 나타나 대법관이란 자리가 그만 더럽혀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저작권자/법률신문)